S-04

소방방재분야의 발전방향

이 수 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Ⅰ. 국가안전관리체계

1) 안전 관련 주요 법률 체계

-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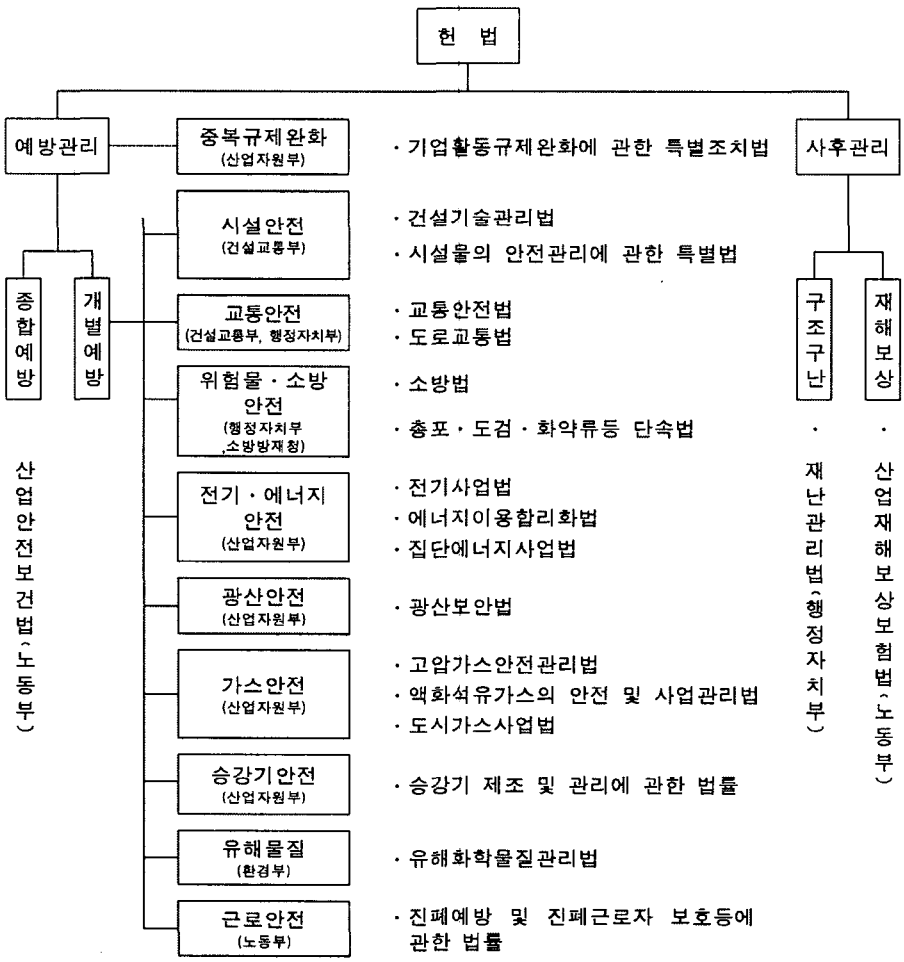

2) 안전 관련 주요 법률 및 담당기관

-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 및 담당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안전 관련 주요 법률 및 담당기관

안 전 분 야	법 률	담 당 기 관	
		정 부	산 하 기 관
기업규제완화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	
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전기사업법	산업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용법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토목건축 시설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광산	광산보안법	산업자원부	
승강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위험물· 소방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단속법	행정자치부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교통안전	· 교통안전법 · 도로교통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 산하기관은 법률에 의해 집행 ◦ 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및 민간 기관임.

3) 안전 관련 법률체계의 개요

-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한 재해관리 법률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관리 법률체계와 사후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관리 법률체계로 나뉘어 있음

- '안전관리'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법률 체계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음

4) 현행 안전 관련 법률체계의 특징

- 현행 안전 관련 법률체계는 산업(생산)과 안전관리업무를 동일부처에서 담당하는 전문성위주의 효율적인 법률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자연재해관리는 중앙집중형 통합관리체제이며, 인위재난관리(가스안전, 전기안전)는 유형이 다양하고, 안전관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산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함
  - 안전관리업무는 생산·유통·소비, 기기의 제조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네트워크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생산과 안전을 같은 부처에서 수행하는 특징임
  - 하나의 안전 분야에 여러 개의 법률이 중복 적용됨
  - 각 법률 간의 상충관계 조절, 예방관리 기능의 종합 조정 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없음
  - 안전 관련 법령 상호간의 안전기준 인정이나 호환성 보장 기능이 결여됨

Ⅱ. 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조직 체계

1)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부조직

<그림 2>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부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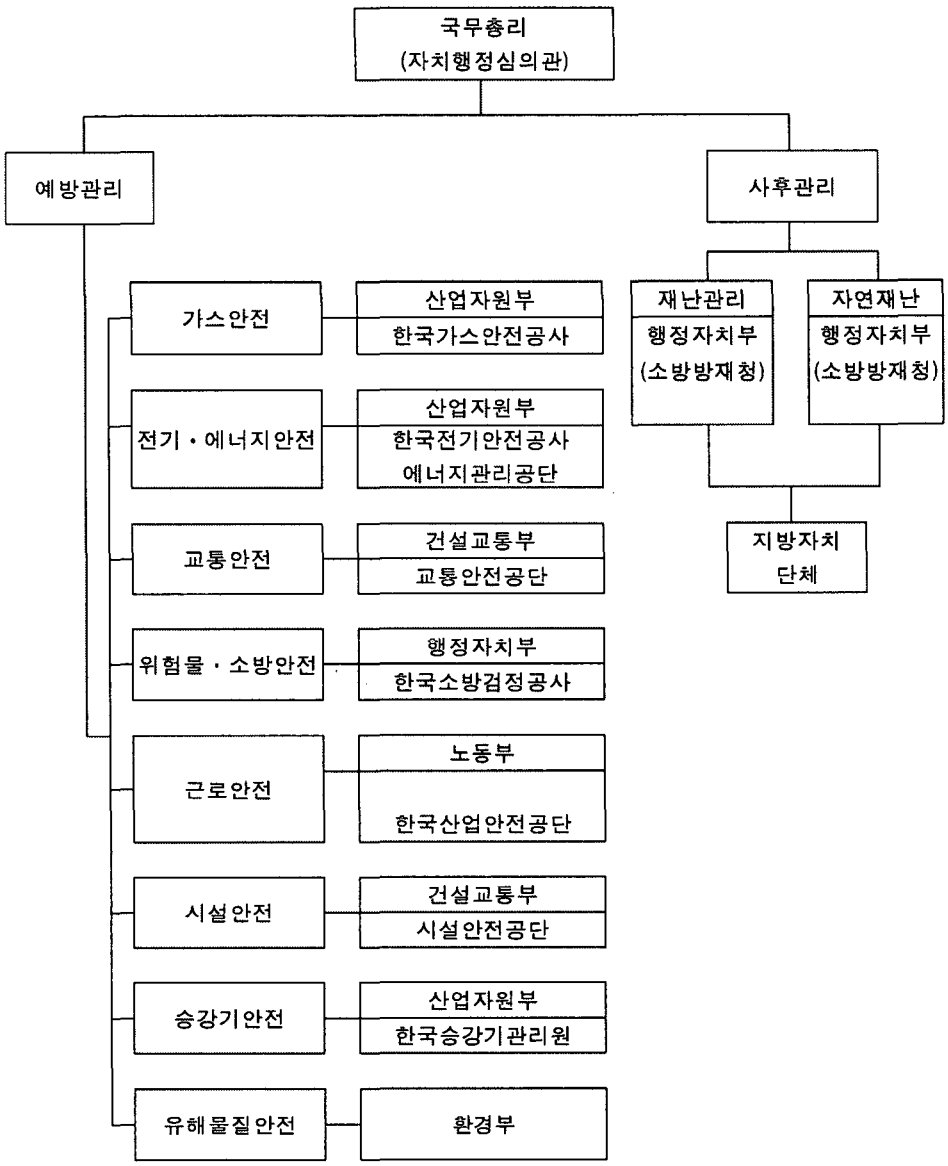

2) 안전관리 담당 주요 기관의 현황

<표 2> 안전관리 담당 주요기관 현황

구분	담당분야	담당기관		
		정부기관	법정기술전문기관	민간기관
예방관리	가스안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G공업협회
	전기에너지안전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기술협회, 한국열관리협회
	교통안전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협회
	소방안전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시설안전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안전점검, 진단기관
	근로안전	노동부 (산업안전국)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승강기안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유해물질안전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관련 각종단체
사후관리	재난관리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	-
	자연재해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	-
안전관리평가 (행정부처)		국무총리 (안전관리심의관)	-	-

3) 안전 관련 행정조직 체계의 현황

- 우리나라의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업무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처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음.

-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분야로 개인주택, 다중이용시설, 건설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들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안전관리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정부 부처로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실무기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있어 분야별로 안전 관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이나 총괄적 조정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 각종 중복규제로 인해 사업장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

Ⅲ. 국가재난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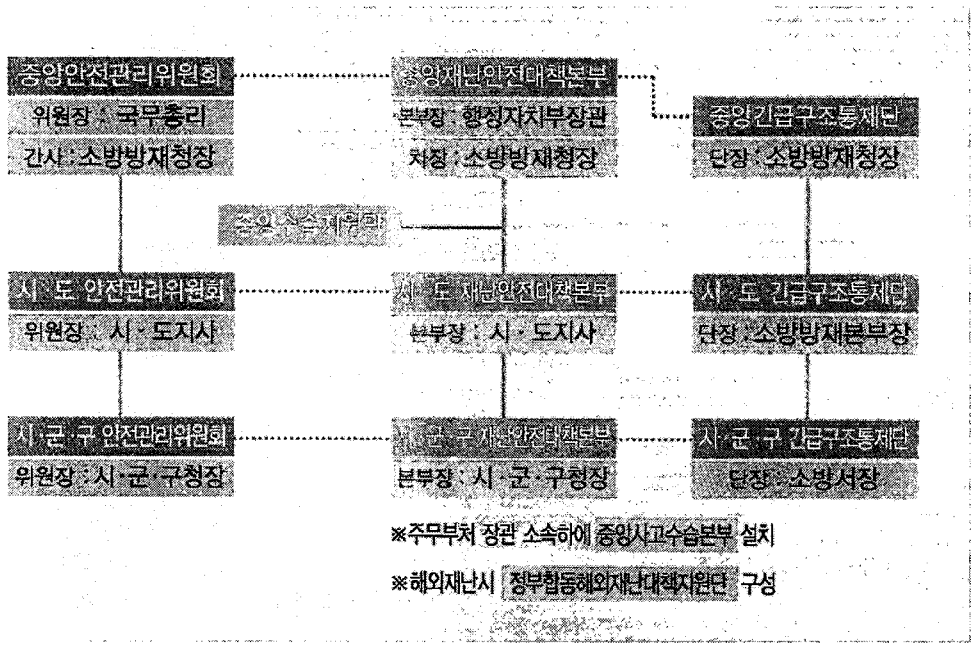

Ⅳ. 국가재난관리 체계 주요 개편 내용

개편 방향

- 통합 일원화
- 명령체계 일원화
- 재해·재난관리업무 일원화

개편 사항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 통합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사고대책본부 통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수습지원단 신설

Ⅴ. 소방방재청 기구

1) 소방방재령의 법적 위상

- 2004. 6. 1 출범한 소방방재청은 헌법 23조에서 천명한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틀이 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구현해 나가는 정부기관이다. 이전의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재난을 통합관리해 나가고 재난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정부조직법상의 주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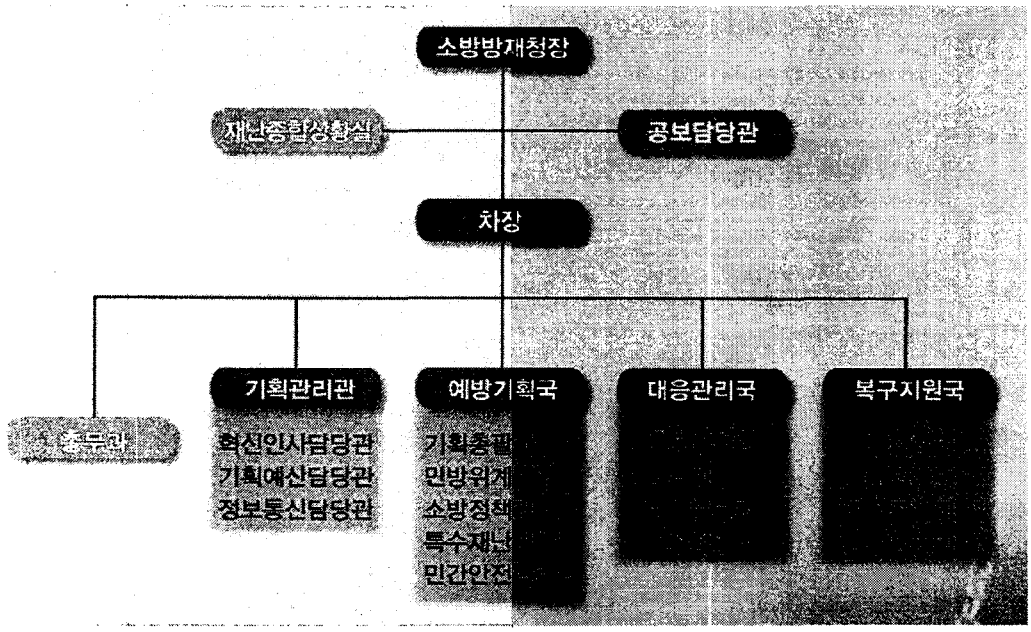

2) 소방방재청 주요 업무

재난예방·대비 :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완화 및 대비체재 확립
-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재난위험예측시스템 확립
- 재난위험지역의 집중적 재난예방 및 완화 프로그램 지원
- 재난보험제도 도입·운영, 재난 관련 시설기준 표준화, 재난 관련점검기능 강화, 재난안전관련 실명제 실시

재난대응 : 과학적 선지시스템으로 재난대응 효율성 제고
-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활용 및 긴급 구조·구급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 각종 현장상황 정보시스템의 선진화 구축
- 민·관·군의 총체적 선진시스템으로 신속 대응

재난복구 : 국민의 고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재난복구 역량 강화
- 재난구호 및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복구 활동
- 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전
- 재난위험지역의 동일 재난 재발생률 감소 및 재난관리체제의 개선

민간협력 : 재난 없는 국가를 만드는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정착
- 지역 단위 및 직장별 자율방재단 구성 및 종합적 정보 네트워크 구축·활용
- 재난체험관·홍보관·박물관 등을 활용한 재난 관련 교육훈련 실시
- 민·관·산·학 협동의 파트너십 공고화로 민간의 종합적·자발적 재난관리 능력 확충

전문성 강화 : 업무 전문성을 배가하는 인재 양성과 체계적 지원
- 연구, 개발 기능의 확충을 통한 선진화된 방재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개발훈련 기회 제공
- 방재산업 육성
- 재난 관련 각종 데이터의 종합적 분석·정리를 통한 재난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재난관리 기능의 변화

소방방재청의 조직구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종전의 민방위와 인적 재난, 자연재난, 대응의 소방으로 서로 단절된 기능중심의 조직이 예방, 대응, 수습복구의 과정별로 조직이 편성되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부의 기능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변화로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이 사람이 바꾸어지지 않았기에 재난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개청에 참여한 실무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의 무게 중심이 사후 수습과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

다는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예상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재난선포로 대피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전에 보급하는 것 등이다.

재난에 임하여 보다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과학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생산적 재난관리를 실현코자 소방방재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제도는 단순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방의식을 높이고 자기책임의식을 제고시키면서 재난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도 개선시키고자 한다. 재난관리에 있어 민관협력체제와 주민자율방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Ⅵ. 소방방재청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사항

1) 소방방재 분야의 연구・개발의 확대 및 활성화
   ① 국립 소방연구소의 설립
   ② 소방검정공사의 연구・개발 기능 확대
   ③ 연구비의 증액
2)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업무의 일원화 및 통합 기능
   노동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3) 소방방재산업의 육성
   법적용의 유연성과 육성 방안 제시
4) 대 국민 안전의식 고취 업무의 개발 및 홍보
   안전문화운동, NGO 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5) 국제협력의 강화
6) 소방방재와 연관된 보험기능의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
7) 소방관련 대학의 학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지원
8) 각 시・도의 소방방재 체험장의 확충 지원